

EU의 유기농식품 검인증시스템 연구 -독일을 중심으로-

유 덕 기*

A Study on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EU - Germany -

Yoo, Duck-Ki

The Council Regulation (EEC) No 2092/91 of 24 Juni 19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is Regulation describes the legal framework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obtained organically. The Regulation establishes a harmonized framework for the production, labell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order to increase consumer confidence in such products and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producers. This article presents a study abou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Germany. In order to guarantee respect for the rules of production, the Regulation provides for an inspection system to ensure that operators who produce, prepare or store organic products or import them from third countries notify the competent private and public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ir activities. These inspection authorities must, at the very least, ensure application of the minimum inspection and precautionary measures laid down in Annex III to the Regulation. For the production of meat, the Regulation states that the Member States must guarantee the traceability of products throughout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preparation chain.

Key words : *council regulation,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rganic production, precautionary measures, traceability*

* 동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I. 서 론

1998년 4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기본법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과 무농약(무항생제 축산물) 및 저 농약농산물로 구분하여 일반관행농산물의 품질인증제와는 달리 표시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주요 인증기준은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및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다.

이와 같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가이드라인과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검인증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소비시장에서의 신뢰성 빈약, 다양한 표시인증제, 민간인증기관의 낮은 신뢰도, 유기농산물생산중심의 인증기준, 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의 투명성 그리고 분야별 상호 연계성과 일원화된 관리시스템 결여, 유기농가공식품수입 급증 등으로 인하여 소비시장의 혼란과 과잉생산 등 도약기에 접어든 우리 친환경유기농업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2008년 유기농가공식품 인증제도(안)를 마련, 2008년 하반기에 공포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유기농규정(EU-Öko-Verordnung)에 의하여 유기농식품 검인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EU국 중에서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유기농식품 검인증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특징과 운영 및 관리 등을 파악 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유기농식품의 차별성을 지향하고 시장의 신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검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기농가공식품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일원화된 검인증시스템과 국제기준에 상응한 유기농가공식품 검인증제도 구축에 기여하며 고객의 욕구충족과 유기농식품의 프리미엄을 제고시켜 소비촉진은 물론 수출을 향상시켜 유기농시장의 장기적 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EU유기농규정의 목표와 특징

1. EU유기농규정의 목표

EU위원회는 1980년대 후반에 몇몇 EU국에 의하여 마련된 유기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검사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91년 6월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표시에 관한 규정(No. 2092/91)을 제정하였다. EU유기농규정의 목표는 ; •유기농산물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 •유사 유기농산물 배제, •과잉농산물 감소와 수급균형 추구를 위한 EU농업정책의 전환 모색, •자연환경보호와 농촌 공간보존에 두고 있다.

2. EU유기농규정의 특징

EU유기농규정은 EU위원회의 평의회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든 EU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국가들은 유기농규정을 각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도입하고 적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로, 덴마크와 핀란드, 스페인의 경우는 검사와 인증을 국가기관이 직접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2008년 현재 23개의 유기농민간인증소를 허가 승인하여 검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U유기농규정은 프로세스 지향적 유기농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즉 유기농산물의 품질은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유기농법만을 통하여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U유기농규정의 기본은 1980년에 제시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ovement : IFOAM)¹⁾의 기본지침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U국 중 특히 독일은 범세계적으로 유기농식품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에 EU유기농규정은 국제유기농식품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EU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식품은 유기농(BIO)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EU비회원국에서 유기농식품을 EU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EU유기농규정에 적합한 농법과 생산과정 그리고 검사표준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U국으로 유기농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유기농업관련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EU유기농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후 지난 수년간 많은 국가들이 EU유기농 규정과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별 유기농관련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²⁾ 유기농가와 가공업 및 유통업체들이 유기농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기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시장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수

1) IFOAM의 본부는 독일 Bonn에 위치하고 있음.

2) 한국 :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본 : 2001년 JAS(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미국 : 2002년 National Organic Program(국가유기식품프로그램) 등이 있음.

송과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하여 유기농식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검인증제도에 대형유통 및 도매업체도 포함되어 졌다. 검인증제도개선사업이 더욱 진전되어 감에 따라 검사비용의 증가와 시간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철저한 유기농산물감시와 검인을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인제공부담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유효성 농약사용에서 보호하고 속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일연방의 자연건강식품(Bundesverband Naturkost Naturwaren: BNN)단체는 관행적 과채소류, 특히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로 표기하는 등 안전 및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독립적인 협력기관에 의하여 농산물에 대한 잔유량 검사를 하고 이의 결과를 일정 인터넷뱅크에 저장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서 문제발생 시에 검색을 통하여 신속한 유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유기농 검인증시스템과 규정은 유럽의 일반농업분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유기농업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와 가공 및 유통업체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U유기농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Ⅲ. EU의 유기농 검인증시스템

1. EU-유기농규정의 주요 구성요소

1) 적용범위

EU의 모든 회원국들은 EU유기농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며 자국의 실정에 알맞게 추가적으로 실행규칙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유기농규정에 의한 의무적 규정과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적 규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2년 유기농법(Öko-Landbau Gesetz : ÖLG)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행정업무와 EU유기농규정실무기관을 설립하여 위반 시의 벌칙 및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수립하였다.(<그림 1> 참조)

2) 표시

EU유기농규정은 유기농의 특성을 표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기농규정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의 전 생산과정에서 가공 및 저장, 유통 및 수출입에 이르기 까지 일정한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기농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시규정은 농산물과 섭취가능한 모든 식품(기호식품포함) 및 사료³⁾에 적용하고 있다. 유기농식품 표시는 광고 및 홍보 시에 유기농식품의 구성이나 함유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

3)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사료는 유기농표시를 할 수 있도록 2003년에 새로 규정되었음.

로 유기농식품은 100% 유기농산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행농산물이 포함될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⁴⁾(<표 2> 참조)

3) 농산물생산과 가공

EU유기농규정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방법과 농작물 및 축산물생산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유기농산물생산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비료와 농약, 사료 등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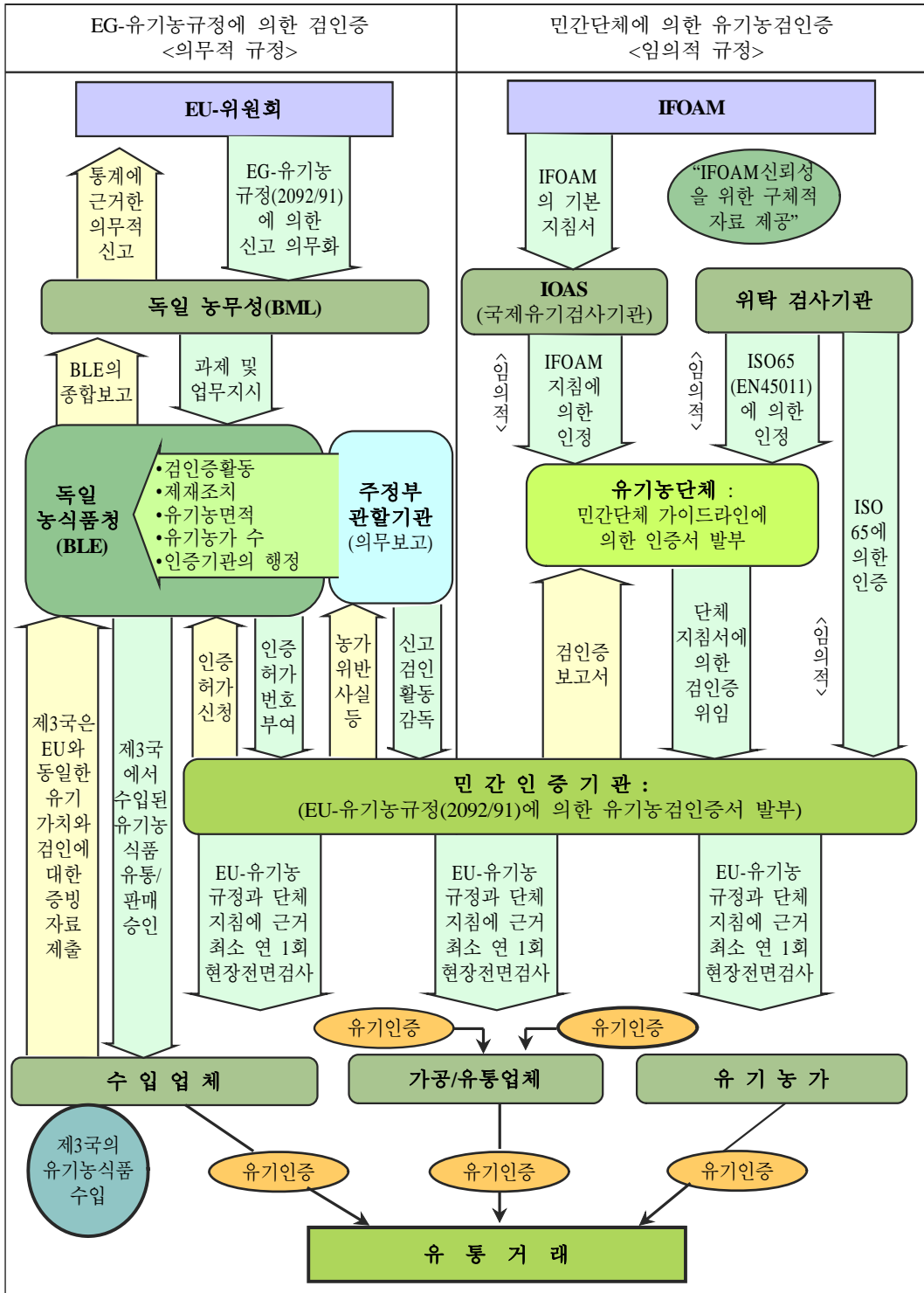
유기농가공식품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표시규정과 원료와 첨가물 및 부수적 식재료구성의 허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공과정에서 방사선 요법이나 유전자 조작에 의한 생산 및 원료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화학적 합성농약과 비료와 유전조작 등은 금지되어 있으나 EU유기농규정을 준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식품에 위해물질의 잔유량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잔유량의 한계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이 아닌 것으로 강제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관리기관이나 검사소에서는 잔유량이 검출될 경우 EU-유기농규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4) 검사

EU유기농규정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및 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EU국들은 민간업체에 검사소운영을 위탁하고 감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영인증기관은 유럽표준 EN 45011(Europäische Norm 45011)⁵⁾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의 기본적 요구조건은 <표 1>의 검사조항 부록Ⅲ에서 참고할 수 있다. 모든 유기농생산과 처리 및 가공품은 최소 연 1회 전수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외에 표본조사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도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에 대한 기록장, 포장, 수송 및 저장과 특수검사, 처리, 유기농식품수입 등을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4) EU유기농규정, 제5조 참조.

5) EN45011은(=ISO Guide 65)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으로서 EU-비회원국 검사소의 생산물인증시스템운영을 위한 일반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1> 독일의 유기농 검인증시스템

5) 수입

EU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 및 처리, 가공된 유기농식품은 EU국과 동일한 생산 및 검사 방법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EU국내에서 유기농식품으로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위 제 3국의 리스트(EWG규정 No.94/92)는 EU위원회에 의하여 EU유기농규정과 동일한 검사방법을 도입 또는 전환한 국가를 선정하여 만든 EU비회원국가 목록이다.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유기농산물은 간단한 검사방법을 통하여 수입되어 진다. 대량수입일 경우는 EU유기농규정(11조 6항)에 따라 수입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관할 수입검사기관은 수입유기농식품이 EU와 동일한 유기농생산규정과 검사방법을 통과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되면 통관을 승인하고 있다.

6) 규정의 주요내용

EU유기농규정은 총 16개 조항과 8개 부록 그리고 몇몇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EU유기농규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조항 그리고 해당부록 및 관련규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EU 유기농규정의 주요 구성 및 내용

구 분	조문 및 부록	주 요 내 용
농 업	6조	- 농업생산에서의 일반적 유기농조건 규정
	6조a	- 종자와 작물에 대한 규정
	7조	- 규정의 부록II(허용된 농생산 투입물)의 개정을 위한 법 규정
	부록 I	- 생산농가의 기본 분류 규정 작물과 농작물 축산과 축산물
	부록 II	- 농가에 허용된 농산물생산 투입물 분류 리스트 비료와 토양개량제 작물보호제 및 기타 병해충방지제 사료 가축사료첨가제 축사시설 위생 및 방지제
	부록 III	- 농가의 기본검사조건과 기록의무사항, 농업활동에 대한 일반적 규정; 예, 야생수집과 제 3자에 의한 검사의무규정
	부록 VII	- 축종별 ha당 최대 허용 사육두수 규정
	부록 VIII	- 축종별 최소축사면적 및 자유공간면적 규정
	EG규정 (No. 1452/2003)	- 관행농업의 종자 및 작물변식을 위한 예외규정 존속과 예외 규정의 시행규칙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구 분	조문 및 부록	주 요 내 용
가 공	1조 2조 5조 부록 III 부록 VI	- 규정대상범위 - 가공원료인 유기농산물의 일정한 생산일(기간) 허용 규정 - 무가공농식품 표시규정과 관행적 생산식재료 및 방사선처리금지규정 - 가공업의 기본검사규정과 기록의무규정, 가공업체의 일반적 준수규정, 농작물과 축산물 및 식품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EU비회원국에서의 수입과 제3자에 의한 검사의무규정 - 유기농가공식품에 허용된 리스트 비농업부문에서 생산된 부수적 식재료 가공보조 및 첨가제 관행농업에서 생산된 첨가물 - 부록 VI의 개정과 관행농산물 첨가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
검인증 시스템	8조 9조 부록 III 부록 IV	- Bio-마크로 표시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가의 의무적 검사와 관할 기관에 신고 의무규정 - EU회원국의 검사시스템 수용조건 규정 - 농가의 기본검사조건과 기록의무사항, 모든 유기농가의 일반적 준수사항과 특수적 준수사항 농업 ; 야생수집 농작물과 축산물 및 식품 처리 비회원국에서의 수입 제3자에 의한 검사의무 - 검사신고 사항
비회원국 에서의 수입	11조 부록 III EG규정 (No. 1788/2001) EWG규정 (No. 94/92)	- EU비회원국에서의 유기농산물 수입에 관한 규정 - 유기농가의 기본검사요구조건과 기록의무사항 수입업체의 일반적인 준수사항과 비회원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위한 특수적 규정사항, 제3자의 검사의무 활동의 중요사항 - EU비회원국에서 EU국으로 유기농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규정과 수입 관련 요구되는 전수 및 표본검사 서류건본을 포함한 기록자료 등 수입 조건 및 필요자료 제시 - 제3국 리스트 ; EU유기농규정에 의해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검사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한 EU비회원국의 목록
라벨표기	2조 5조	- 유기농산물이 농가로부터 생산 공급되어진 기간관련 규정 - 비 가공된 1차 유기농식품에 대한 표기규정
유기사료 생산	부록 II	- 허용된 생산투입자재, 유기사료생산자관련 중요사항 C1편 : 관행농법에 의한 사료원료로서 유기축산에 허용된 사료리스트 C2편 : 동물성과 유기농과 관행농에서 유래된 급여 가능한 사료원료 리스트 D편 : 가축사료 첨가물

구 분	조문 및 부록	주 요 내 용
유기사료 생산	부록 III	- 유기농가의 기본검사요구조건과 기록의무사항, 사료생산자를 위한 일반적 규정과 사료에 대한 특수규정, 제3자의 검사사무 활동의 중요사항
	규정(EWG) No. 223/2003	- 유기농에 의해 생산된 사료와 혼합사료 및 사료원료를 위한 라벨표기 규정과 유기농사료의 유통 판매 허용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유기농- 라벨	10조 부록 V	- 유기농식품을 위한 EU국 단일형태의 이용/ EU-로고에 대한 규정 - “유기농-EG검사시스템”이란 검사표시를 EU용어로 번역과 EG-Emblem(엠블럼)을 위한 지침
적용범위	1조 2조	- 규정의 적용범위 - 유기농산물이 농가로부터 생산 공급되어진 시기관련 표시규정
정 의	4조	-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 및 개념 정의
기 타	3조 10a조 12조 13~16조	- EU유기농규정이 추가적으로 타 법적 관련규정 유효 적용함을 제시 - 규정위반 및 남용한 경우 회원국에 대한 대응조치사항 - EU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기농유통을 제약하는 행위; 유기축산의 엄격한 지침으로 인증 허가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 - EU유기농규정의 개정, 확대개선, 유효기간 및 회원국의 신고사항규정

* EG : Europäische Gemeinschaften의 약자로 유럽공동체임. EWG: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유럽경제공동체)의 약자로 유럽공동체 산하의 한 분야임. EG는 유럽연합(EU)로 통합되었음. EU 이전의 규정은 EG 또는 EWG규정으로 이용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europa.eu.int/eur-lex/de/index.html>, <http://www.gtz.de/organic-agriculture>, <http://www.oeko-regelungen.de>, <http://www.gfrs.de>

2. 가공 및 유통부문의 검인증

EU유기농규정은 유기농가공식품 생산이나 제조 그리고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정된 규정에서는 수산양식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EU유기농규정 제8조를 보면 규정에서 제시된 의도에 따라 유기농식품을 생산하고 선별처리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생산자나 기업은 EU유기농규정에 의한 검사절차를 수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4조에서는 유기농식품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⁶⁾ 즉, 유기농식품의 선별처리, 포장 및 가공은 검사필수사항이다.

6) EU-Öko-Verordnung 제4조에서 “처리”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거나 농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포장하거나 유기농지침에 따라 신선도와 저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형하거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1) 가공식품의 인증조건

EU유기농규정은 유기농식품생산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송 조건

2001년 개정된 EU유기농규정의 가공부분 부록 III7)을 보면 수송중의 상품조작이나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 포장된 유기농산물의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곡류나 종자수송, 우유나 주스, 맥주 등 액체류의 탱크차량수송 시에는 반드시 봉인하여 밀폐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송조건은 밀폐하지 않고 수송하는 경우 예로, 과채류용 Box나 망포장, 그리고 Big-Bags나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수송상품의 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농산물판매자(업체) 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규정 제5조에 근거한 유기농 표시, ■ 유기농생산자 관할 검사소의 코드번호, ■ 공급자 또는 수송업체이다.

(2) 검사 통과된 농산물의 가공

EU유기농규정에 의하면 유기농산물가공은 관행농산물가공업체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이 혼합되거나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기농식품과 관행농식품의 명확한 표시, ■ 저장 및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 및 차별화, ■ 유기농산물의 가공생산시간 또는 일정을 관할 검사소에 일정 기간 내 신고의무, ■ 유기농산물 가공전에 가공시설의 청소와 이의 영향에 대한 검토와 기록의무이다.

(3) 원료농산물과 첨가물

유기농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기농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EU유기농규정 가공부분의 부록 VI에서 리스트로 제시하고 있는 가공보조제나 비농업부분 및 관행농산물의 부수적 원료를 사용할 수는 있다. 관행농산물의 부수적 원료사용비율은 가공식품 전체 농산물 원료의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료가 유기농품질이 아니거나 EU유기농규정 부록 VI의 C편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관련 해당관청인 독일 농식품청(Bundesanstalt Land- wirtschaft und Ernährung : BLE)에 관행농산물의 원료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⁸⁾ 이 경우에도 관행농산물의 원료사

7) EU유기농규정 부록 III의 일반적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유기농가가 자가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비 포장상태로 수송할 경우에는 유기농가의 관할 검사소나 유기농산물 구매자의 관할 검사소에서 허가를 받도록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음.

8) 관행농산물의 원료사용관련 예외적 승인과 유기농가공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는 www.zmp.

용비중은 전체 농산물원료의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4) 전환기 원료농산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서의 전환기농산물은 관행농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 농산물을 유기농가공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오로지 유기농산물원료만 사용한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전환기농산물의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은 유기농식품으로 표시할 수가 없으며 다만 규정 제5조 5항에서 제시한 데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⁹⁾

(5) 가공기술

EU-유기농규정은 가공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이 적다. 다만 이온화된 광 및 방사선 처리와 유전자 처리기술은 금지하고 있다.

(6) 유전자변형 금지

유전자변형된 농산물원료와 첨가물, 가공보조식품의 사용은 완전 금지되어 있다. 농·식품원료공급자가 유전자변형금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공업체는 원료공급자로 부터 유전자변형금지 준수를 확인하게 된다. “유전자 변형 없는 생산”이란 확인서는 인증기관이나 관할검사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2) 기록

(1) 초기점검

유기농식품가공업체는 검사초기에 검사에 필요한 업체의 주요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주소, ■ 경영자 및 주요근무자 성명, ■ 원료공급자와 고객 리스트, ■ 공장 건물과 시설이용 계획, ■ 가공과정과 상품 수송방법이다.

그밖에도 경영자는 EU유기농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 내 조치사항들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사업이 규정준수에 충분한가에 대한 여부는 검사자 방문 시에 점검하게 된다.

(2) 경영기록

유기농식품가공업체는 검인증기관에 의하여 유기농식품의 물류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de/oekomarkt/ble.asp에서 찾을 수 있음.

9) 전환기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은 “유기농으로의 전환범주에서 생산되었음”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영기록을 해야 한다. 물류검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원료농식품 입고, ■ 최종상품 출고, ■ 품목리스트, ■ 품목별 식품의 함량(중량, 가공 처방 등), ■ 상품표시, ■ 재고품 목록, ■ 손실량(저장 및 세척 손실 등)이다.

3) 상품표시 및 라벨

(1) 유기농가공식품

유기농규정을 보면 유기농가공식품의 레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생산자(내부 거래자 포함)의 성명과 주소, ■ 상품의 표시와 량, ■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표시(예, Öko-보리, Bioland-감자), ■ 검인증기관의 코드번호(예, DE-003-검사소) 유기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기농품목에 근거해야한다. 완전히 EU유기농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상품으로서 관행농식품 최대 5% 함량을 준수한 경우는 유기농생산임을 표시하는 구성과 형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가공식품원료리스트에 유기 또는 관행 농산물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포장 개봉된 상품인 경우는 라벨에 인증기관의 코드번호를 반드시 표시할 의무를 가진다. 인증기관 코드번호 표시의무가 없는 경우는 유기농생산자가 직접 생산, 최초 포장한 1차 농산물인 경우이다.

(2) 유기인증 로고

유기농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여 제약 없이 표시할 수 있는 유기농상품은 추가적으로 Bio-로고를 사용 할 수 있다. Bio-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Bio-인장 Info.-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¹⁰⁾

유기인증로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여하고 있다; ■ 예방조치에 의한 병해충방제, ■ 화학비료사용 금지, ■ 토양, 물, 공기의 보호와 오염방지, ■ 종 다양성 보존, ■ 에너지소비 절감과 농업자원보호, ■ 폐쇄된 물질순환 지향적 농법 이용, ■ 일정 유기농지침과 검인증 절차 준수, ■ GMO 포기, ■ 농식품 생산의 투명성 보장이다.

(3) 유기농식품의 EU-공동마크와 엠블럼

유기농산물이 EU국에서 생산되고 유기농식품원료 비중이 95% 이상인 경우에는 유기농식품을 위한 EU-공동마크와 엠블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U비회원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원료는 유기농가공식품 총 원료함량의 최대 5%로 제한되어 있다. EU-공동 엠블럼사용에 대한 형태와 크기는 EU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다.¹¹⁾

10) Bio-인장 Information사무소는 독일 53123-Bonn, Rochusstraße 2에 위치함.(www.bio-siegel.de)

11) EU-유기농규정 제10조 부록 V 참조.

<표 2> 독일의 유기농구성 비중에 따른 유기농가공식품 표기가능 범위

유기농 원료비중	투입 허용된 관행농산물 비중*	투입 불허된 관행농산물 비중**	표기 가능성
100%	0%	0%	제약 없음
95%	최대 5%	0%	제약 없음
70%	최대 30%	0%	특정표기 규정적용
< 70%			Bio표기 불허
	>30%		Bio표기 불허
95%	0%	5%	Bio표기 불허

* 규정 부록 VI C편의 원료투입 가능한 관행농산물 리스트에 해당된 농산물 또는 정부가 유기농가공식품에 투입을 허용한 농산물

** 규정 부록 VI C편의 원료투입 가능한 관행농산물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정부가 유기농가공식품에 투입을 불허한 농산물

자료 : Huber, B.(1999), Ökologische Backwaren Herstellen und Verkaufen

(4) 유기농식품 표시가능 범위

유기농가공식품이 유기농산물 비중 95% 이하 최소 70% 이상으로 구성하여 생산될 경우 유기농원료구성 비중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유기농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 2>는 유기농원료구성 비중에 따른 표기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환기에 생산한 농산물 가공은 순수 단일원료만으로 가공 생산한 식품(예, 사과주스)인 경우에 만 유기농 전환기농·식품임을 표기 가능하다.

2000년 EU유기농규정의 부록III이 개정됨으로서 검인증신청을 한 가공업체는 해당 유기농인증기관에 의해 최초 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직후부터 유기농식품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3) 유통업체의 검사

현재까지 규정상 유기농식품 거래 및 저장과 관련한 검사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자발적 검사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가 유기농식품을 직접 생산, 처리,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통업체의 처리활동이 예로, 포장개봉, 재포장, 대형포장에서 소 분업포장 등의 작업을 통하여 유기농식품의 본래 형태를 변형할 경우는 의무적 검사대상이 된다.

EU-유기농규정¹²⁾에 의하면 유기농식품은 상품내용을 교체 조작하거나 납 봉인을 파손하

12) EU-Öko-Verordnung 부록 III 7절 참고.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쇄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포장과 용기 또는 수송수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물론 도·소매업체에 수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적용에서 보면 의무적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의하여 저장된 유기농식품은 소매용으로 포장하거나 또는 개별포장에 라벨을 부착시켜야 한다.

소위 가짜유기농식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EU-위원회는 모든 유기농식품시장 참여자는 의무적 검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EU유기농규정을 확대 개정을 요청한바, 2004년 EU회원국은 최종 포장된 유기농식품을 저장하고 유통 거래하는 모든 업체도 의무적 검사대상에 적용된다는 개정규정을 2005년 1월1일부터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유통업체들은 유통 거래활동에 대하여 의무적 검사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인 경우 허가된 EU유기농인증기관과 계약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유통업체가 구매자의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오리지널 포장을 개봉하여 다른 포장으로 재포장할 경우에는 의무적 검사대상이 아니다.

관행처럼 포장 없이 포기나 바구니 등으로 수송하거나 판매하는 농산물(과일, 배추 등)은 끈이나 테이프로 다발이나 묶음 또는 개별 포장하여 유기농표기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포장인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은 오리지널포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검인증의 유형과 내용

1) 검인증절차

독일에서의 검사는 EU유기농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인증기관은 EU유기농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관청에서 허가 된다. 인증기관 허가신청은 독일의 몇몇 주 지역에 있는 연방 농식품청(BLE)이며 인증기관의 검사허가분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 검사분야 A = 생산, ■ 검사분야 B = 처리(가공), ■ 검사분야 C = 수입
- 검사분야 D = 유기농식품관련업체의 위탁사업, ■ 검사분야 E = 사료

따라서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생산지역 또는 기업소재지의 관할 주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 적합한 인증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차후 인증기관을 다른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비용과 인증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장단점이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로, •추가적 표준에 대한 인증여부(예, 유기농 단체의 표준지침, 지역브랜드프로그램, 우수농산물품질표준 등), •부수적 정보(예, 정기적 검사정보지 제공 등), •전화, 인터넷 등 용이한 통신연계성 및 민원서비스, •규정에 적합한 라벨 및 가공처

방 인증 등이다.

인증기관에 검사의뢰를 신청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검인증계약서, 신청서, 농가 및 기업경영에 대한 기본적 자료이다. 구비서류가 인증기관에 제출되면 인증기관에 의하여 농가 및 업체는 관할 연방관청에 신고 되어진 이후에 농가 또는 기업의 신규인증이 이루어진다. 신규인증이 통과되는 즉시 유기농식품의 생산, 가공처리 또는 유통거래를 할 수 있다. 독일의 인증기관은 EU유기농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되고 관할 BLE에 신고 되어있다. 인증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인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인증서의 기본조건

EU유기농규정에 의하여 책임과 보증 그리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검인증서는 유기농산물 및 원료와 유통시장에서 필수적이다. 모든 유기농식품 공급은 출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기농인증서는 내용적으로나 레이아웃(Lay-Out) 그리고 표시방법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EU유기농규정(I)은 유기농식품관련 모든 업체를 위한 기본적 검사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 대상자와 대상물, 구매, 참여자의 여건, 인증목적 등 상황에 따라 표시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용된 검사방법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는 아주 다른 내용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를 “일반적 지침의 일치성”(generell Richtlinienkonformität)이라고 한다. 유기농식품인증기관은 유럽표준(EN)45011(=ISO Guide65)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EN-45011는 유기농생산인증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일반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인증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인증대상범위, 즉 인증생산물의 명칭, 해당 생산물 표준제시, 해당 검인증시스템 제시(예, 표준검사프로그램), •인증유효시점과 유효기간. 그밖에 인증기관은 인증소유권과 인증허용이용 및 제시, 인증서와 인증의 일치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유기농검인증의 유형

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유기농인증서에는 농가인증과 일치성검증 그리고 Charge-인증과 검사필증으로 분류된다.

① 농가인증

유기농인증기관은 자체검사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농가 및 단체에게 경영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¹³⁾ 농가인증은 기본적인 표준이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농가에게 부여하는

13) EN-45011의 조문 12. 3참조.

시스템인증이다. 인증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 1회 검사에서 통과될 경우 새롭게 재 발급되어 진다. 이러한 인증은 단체규정에 근거한 검증방법과 EU유기농규정에 근거하여 생산된 유기농식품임을 구매자에게 입증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② 일치성 인증

EU유기농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규정에서 제시된 일치성관계에 대한 농가경영인증의 특별형식인 규정일치성에 대한 인증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다. 이 증서에 의하여 농가는 검사규정에서 제시된 일치성관련 표시나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¹⁴⁾

가공식품기업인 경우는 흔히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원료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성 검증은 농가생산경영 및 단체에만 해당된다.

③ Charge-인증

Charge-인증(Charge certificate)은 일정 유기농식품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발송되는 유기농식품의 공급규정에 근거한 적합성을 증빙하는 인증서이다. 이외에 유기농식품 분류인증, 상품인증, 거래인증 등이 있다.

EU회원국내의 유기농식품 수송을 위한 농·식 분류인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고객에게 검인증빙으로서 공급자의 농가인증과 농·식품출하허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급자의 해당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분류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예, 운송장, 인도장 및 계산서, 구매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EU유기농규정의 일반규정 7조 부록 III에 의하면 EU국내에서 농·식품을 비포장상태 예로, 벌크형태(비포장 곡류)로 타 생산지나 처리장으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장과 함께 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운송장에는 의무준수사항과 농·식품의 포장, 수송탱크 또는 수송수단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운송이 가능하다. 운송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에 의하여 발부되며 연 1회 의무적 검사절차에서 확인검사를 받게 된다. 운송장의 의무적 기록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공급자 또는 운송업체의 이름과 주소 또는 소유자나 판매자,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 표시, •해당검사소 또는 관할 관청의 이름 및 코드번호, •발급 가능한 경우 비포장 확인서이다.

④ 수입검사필증

수입검사필증의 발급은 EG규정 No. 1788/2001에 의한 필수적 규정이며 제3국에서 EU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2002년 개정된 EG규정 No. 1918/2002에 의하여 강제적 규정이다. 제3

14) EU-유기농규정 제10조 1항과 2항 참조.

국으로부터 EU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식품은 세관에 검사필증원본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화된 수입통관조건은 수출국의 검인기관이외에 수입업체의 관할 검인기관과 감시관청 및 세관까지 연계시킴으로서 수입국의 허가승인 없이 무단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검사필증의 발급을 위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검사필증은 수출업체의 관할 검인기관이나 검인대행기관에 의하여 품목별로 발급되어야 한다.
- 검사필증은 단 1회 원본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복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된 “사본”(“KOPIE”, 또는 “DUPLIKAT”)이란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사필증의 레이아웃(Lay-out)은 규정된 양식에 근거하여야 한다.
- 검사필증은 EU국의 공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과 사인은 예외이며 글씨는 대문자로 또는 타자나 워드로 기재해야 한다.
- 검사필증은 해당검인기관의 발급대장에 근거하여 매년 발급번호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 검인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유기농식품생산계획, 지원촉진사업, 거래확인서 등 모든 검사기본 자료 검토
 - 감시관청 또는 검인기관에 의해 해당상품 수출 전에 상품검사를 수행하거나 EU국¹⁵⁾에 준하는 수출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품생산 또는 가공되었다는 수출업체의 명확한 상품설명을 확보
- 독일의 관련 감시관청은 EG-규정 No.1788/2001 제4조 9항 a)에 근거하여 수입 업체에게 유통승인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상품품목별 수입을 할 경우 제3국의 검인기관에서 발급한 검사필증원본과 함께 유통승인허가증을 독일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에서 검사필증을 검토한 후 통관증명을 확인받은 경우 유기농식품의 통관이 이루어진다.
- 수입업체는 EU유기농규정 부록 III C No. 6에 따른 상품출하검사(Wareneingangs- prüfung)에 대하여 검사필증원본에 확인기록을 하여야 한다.

⑤ 민간단체 인증

EU의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 또는 고품질의 유기농생산표준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예, Bioland)가 유기농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EU유기농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 민간단체 인증은 시스템인증 또는 공급자 차지인증(Charge certificate)에 해당

15) 제3국이 EU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EU국의 수입 및 유통관련 규정 (EWG)No.2092/91 제1조와 제11조 1과 6항을 준수하여야 함.

되며 유기농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부하며 타인의 대응은 금지되어 있다.

⑥ 유전자변형 인증과 설명

유전자변형(GMO)농산물과 이에 파생된 농산물은 유기농생산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기농생산과 가공식품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EG규정 No.1829/2003과 1830/2003에서 GMO-Free에 대한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GMO와 관련한 검사는 생산자설명과 분석결과 그리고 인증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자설명은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으나 출하표본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며 분석한 실험실이 그 실험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실험대상물(농산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

GMO-Free에 대한 인증시스템은 “from testing to traceability”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즉 GMO-Free의 농산물공급을 보증할 수 있는 농가 또는 기업의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심사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예로, 이력추적, 기록장부, 품질보장 시스템, 리스크 컨셉, 소환절차 등이다.

4) 인증서의 내용

유기농식품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제 3자의 독립적인 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생산자 또는 가공업과 수입업체의 관할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기농식품인증서에는 관할 감시관청에 의하여 허가된 인증기관의 이름과 코드번호가 제시되어 있으며 발급자의 사인과 도장 그리고 발행 지역과 발행일이 표기되어 있다.

유기농인증서에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와 EG-검인증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인증한 생산물, 작목 또는 품목 제시는 시스템인증에서는 의무적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인증농산물에 대한 작목은 EU유기농규정에 근거한 범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란 것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예로, 유기농 또는 전환기농산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생산규모나 량 제시(예, 생산면적)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나 총생산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harge-인증의 경우 상품공급 시에 요구되는 계산서 또는 납품증에 생산물의 종류만이 아니라 생산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품에 Charge-번호 등을 표시함으로써 명확한 상품식별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인증적용부분에 대한 정보 예로, 기본적 생산표준을 제공하게 된다. EU유기농의 경우 EWG규정 No.2092/91에 근거하여 인증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시스템인증에서는 인증효력발생시점 이외에도 인증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인증서의 안전과 한계

유기농 일반규정 9 부록 III에 의하면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기농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확실한 의혹을 가지게 된다.;

① 조작

인증서 제시 내용의 수정흔적	자필로 덮어쓰기
검사필증에 미확인 된 번호 기재	오리지널 포장 또는 봉인파손 등

② 공급과 가격

현저히 낮은 시장가격 형성	현 시장여건 하의 저하된 품질공급
----------------	--------------------

③ 기타 위험요소

불분명한 공급자	불확실한 검인증기관
복잡한 유통단계.	

EU유기농규정 10조에 의하면 인증규정을 위반하거나 확실한 의혹이 입증될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N45011에서도 예로, 인증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이나 허가를 오용 또는 허위표시를 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위반정도에 따라 인증기관은 농가인증을 일정 시정사항을 충족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IV. 한국과 독일의 유기농 검인증제도의 차이점과 개선방안

1. 한·독의 유기농인증제도의 차이점과 특징

<표 4>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유기농·식품검인증 제도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양 국가의 유기농인증제도의 주요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우리나라와 독일의 유기농검인증제도의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비 고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식품위생법(축산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유기농규정(Öko-Verordnung, No. 2092/91)* •유기농法(Öko-Gesetz, 2002) 	* IFOAM 지침을 기본으로 함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환경오염저감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산물 보호/경쟁력강화 •유사 유기농산물 배제 •자연환경보호와 농촌 공간보존 •과잉농산물 감소와 수급균형 추구 	

구 분	한 국	독 일	비 고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립산물 •유기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립산물 •유기축산물 •사료(2003년 도입) •유기가공 food 및 non-food 	독일 ; 전생산 과정, 가공, 저장, 유통, 수출에 해당
인증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 (2008년 38개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의 민간인증기관 (2008년 23개소) 	
표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적 표시(가공품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적 표시(EU규정) •임의적 표시(IFOAM) 	(<그림 1> 참조)
인증대상 및 표시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산물(유기축산)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a)} •재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Bio) •전환기농산물(특정 표기의무) •Organic^{b)} •유기가공식품 및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2010년 폐지 예정 b) EU 경우임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육성법(17조)에 의한 정부/민간인증지침^{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표준 EN45011^{d)} •IFOAM인증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Codex-Guide와 유사함 d) ISO-Guide 65와 동일함
인증표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o인증마크 •생산자성명/주소 •유기농법표시 •인증기관코드번호 	
유기농 (Organic)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상 화학비료/유기합성 농약사용금지 •비유기농포장과의 명확한 구분 •최종가공품에 유기재료 95%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허용자재 사용(초지 2년) •가공품에 유기재료 100% 사용 원칙(최대 95% 허용)^{e)} •허용된 유기농법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 예외적 규정 (<표 2> 참조)
인증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유기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유기가공업 인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업체의 인증 	
유기가공 식품의 인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과 외국산혼합금지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한 유기식품품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포장유기농산물수송 금지 •유기농식품표시 •시간적 공간적 분리 생산/저장 •가공생산시간 기간내 신고의무 •가공시설 위생기록의무 •경영기록/반출입 물류검사의무 	

구 분	한 국	독 일	비 고
유기가공업의 검사대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업경영 정보제공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소재 - 경영자 및 주요근무자성명 - 원료공급자와 고객 리스트 - 공장건물과 시설이용 계획 - 가공과정과 상품 수송방법 •경영기록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농식품 입고 - 최종상품 출고 - 품목리스트 - 품목별식품함량(중량 및 가공처방 등) - 상품표시 - 재고품 목록 - 손실량(저장, 세척, 손실 등) 	
유기가공 식품수송 조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원료공급자 인적사항 •유기농표시의무 •인증기관코드번호 •공급/수송업체명 	
유기농식품 원료/첨가제	•유기농원료사용(9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된 재료 및 첨가제 이용 •기타재료 및 첨가제는 승인제 •전환기원료사용 금지^{f)} •GMO원료사용 금지^{g)} 	f) 최대 5% 내 사용시 표기 g) 인증기관이 확인서 발급
유기가공 식품 표시항목	•유기가공식품품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인적사항 •상품표시와 양 •유기농법 •인증기관코드번호(개방된 상품포장) 	한국 :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3조
유기인증 로고승인/ 이용조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규정 충족(허용농법) •Bio-인증관리사무소 신고 •병해충예방조치 •토양, 물, 공기보호/오염방지 •종 다양성 보존 •에너지소비절감/농업자원보호 •생산의 투명성 보장 	
유기농유통업 인증대상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식품생산, 선별, 수입업체 •포장개봉, 소분업포장업체 •모든 유기농식품유통업^{h)} 	h) 2005년 이후부터 적용

구 분	한 국	독 일	비 고
수입유기농 식품승인조건 (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의 인증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수입허가(농관원) 완제품관리(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와 동일조건외 유기농 인증서 제출(BLE) 	
수입검사필증 발급조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검사필증 1회원본 발급 원본대조필 “사본”(“KOPIE”, 또는 “DUPLIKAT”) 검사필증의 레이아웃(Layout) 규정양식 준수 발급번호 부여 유기농식품생산계획, 지원촉진 사업, 거래확인서 등 검사 제3국의 검사소가 발급한 검사 필증원본과 함께 유통승인 허가증 제출 	독일 : 제3국은 독일로 수출 시 EU국의 수입 및 유통관련 규정 (EWG) No.2092/91 제1조와 제11조 1과 6항을 준수해야 함.
인증기관 승인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연방 농식품청(BIE) 	
인증기관의 인증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 생산분야 B : 가공분야 C : 수입분야 D : 유기농관련 위탁사업분야 E : 사료분야 	독일 : 인증기관이 인증분야를 선택함.
인증서의 기본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번호 인증신청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농장소재지 인증구분 및 인증품목 재배/사육규모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G인증번호 인증신청자의 인적사항 인증대상품목, 생산표준과 표준 검사프로그램 인증유효시점과 유효기간 	독일 : 인증내용과 Layout은 인증대상, 여건, 목적에 따라 다양함
인증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단체인증(자격인증) 취급자/수입자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경영인증(시스템인증) 규정일치성인증 Charge인증(거래적합성인증) 수입검사필증 유전자변형(GMO)인증 	
GMO인증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O종자사용금지ⁱ⁾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O-Free 인증^{j)} 생산자설명(출하조사) 이력추적 기록장부 소환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농산물품질관리법 (2조7항) j) EG규정 No.1929/1930

구 분	한 국	독 일	비 고
<p>위해잔유 물질¹⁶⁾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류농약허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10 이하(식품위생법 제7조 1항) - 준수여부확인필요 시 시험기관에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잔유물질허용기준 없음 	<p>독일 : 위해 잔유물질 검출 시 유기농규정위반으로 추정, 판매금지</p>
<p>인증취소 대상 및 제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위/부정에 의한 인증 - 현저한 인증기준 위반 - 표시변경, 사용정지, 판매금지위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증품 인증표시 - 혼합판매 및 판매진열행위 - 비인증품인지상태로 판매, 보관, 진열 - 비인증품을 인증농산물산물로 광고/인증내용과 다르게 광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행위거부·방해/기피 - 인증지위승계 미신고 - 검사행위거부·방해/기피 - 위반사항보고·자료미제출/시설·장비 등 점검행위 거부·방해/기피 - 위반관련문서 미비치·미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시스템 미 준수 •인증허가 오용/남용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물질 잔유량/종류검출 •운송장 내용 불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상품 표시 미 부착 - 유기농출하/수입관련서류내용 불일치기재(예 : 수입검사증의 미필된 컨테이너 번호, 선하 적, Bill of Lading 등)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 내용 수정흔적 - 자필로 덮어쓰기 - 검사필증 미확인된 번호기재 - 오리지널 포장/봉인파손 •공급과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히 낮은 시장가격 공급 - 현시장여건 하의 저 품질공급 •기타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분명한 공급자 - 불확실한 검사소 - 복잡한 유통단계 	<p>독일 : 위반정도에 따라 인증보류,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p>
<p>인증기관 지정유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일 이후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1년 단위로 갱신 	<p>한국 : 2006년 도입</p>
<p>인증기관 지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위원 7인 이상 - 인증심사위원 5인 이상 •전문인력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학계 4년제 대학졸 - 농림환경계기사자격증소지 - 연구단체 등 5년 이상 경력 - 외국인증기관 위 동등 자격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검정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석사학위 - 농학계 학사 2년 이상 경력 - 대학졸업자 5년 이상 경력 •검인증기관 및 위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및 기관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시설자체보유 또는 외부위탁 협력체결 	

구 분	한 국	독 일	비 고
인증기관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업무규정 - 인증업무실시방법 - 사후관리방법 - 인증수수료 - 인증심사원주수사항 및 관리, 감독 등 		
인증기관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L(독일농무성, 총괄지도) •BLE(독일연방농식품청) •관할주정부(인증기관 감독) 	
인증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당 35~100만원 	독일: 주정부 보조 (10~120만원/ha)

- 1)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인증제도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하에서 생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독일은 EU유기농규정 하에서 1차 유기농산물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 일원화되어 연계관리 운영되고 있다.
- 2)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는 의무적 표시규정은 양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기농 검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체적인 인증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임의적인 표시규정을 수행하고 있다. 임의적 표시규정은 의무적 규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생산자단체의 유기농식품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 3) 독일은 유기농인증으로 단일화하여 전환기농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농인증제도가 친환경농산물범주에 무농약, 저농약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가공식품인 경우 이원화된 법 규정과 관리부서 때문에 우리나라는 1차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유기농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기농식품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5) 국내 유기농인증기준의 핵심은 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사용금지에 있는 반면 EU는 프로세스 지향적 유기농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즉, 유기농산물의 품질은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유기농법(농가경영시스템인증)을 통하여 인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 (유기)농장에서 작목별

-
- 16) “유해 잔류물질”이라 함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 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함.

로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이 상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6) 인증기준에 따른 개별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은 농가경영인증 이외에 검사규정과 일치할 경우 일치성 인증을 통하여 관련 표시나 로고를 부착하고 있으며 Bio-인증표시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 7) 국내의 경우 유기농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전무한데 비하여 독일은 유기농원료와 연계하여 생산시간, 수송, 위생, 반·출입 물류와 경영기록의무 등을 대상으로 검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와 가공 및 유통업체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기농가와 가공업 및 유통업체들이 유기농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기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시장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8) 독일의 민간인증기관이 독립성을 가진 제3자 기관중심으로 의무적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약 40% 이상이 생산자단체중심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에 의한 IFOAM의 경우 의무적 규정보다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차별성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 9)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분야가 생산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5개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인증기관이 선택하고 있다. 즉, 인증기관이 분야별 전문능력에 따라 한 분야 또는 2개 분야 이상 지정허가를 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 10) 유통업에 대한 인증이 전무한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은 모든 유기농식품유통업을 대상으로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출하에서 소비까지 상품교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 포장, 저장, 관리 등을 엄격하게 검사 관리하고 있다.
- 11) 유기농식품 공급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인증 이외에 Charge인증(거래적합성인증)을 시행하여 명확한 상품식별과 투명성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12) 수입 농·식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수출국의 인증서확인만으로 국내수입과 유기표시가 가능한 반면 독일은 EU와 동일한 수준의 유기인증서 제출과 제3국의 검사소가 발급한 검사필증원본과 함께 유통승인 허가증 제출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유기농식품에 대하여 EU국의 유기농식품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기농식품수입관련 업무를 BLE가 전담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유기농식품 가공용 원료의 수입허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유기농가공완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허가 및 관리체제로 인하여 국내소비시장 관리체계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

독일의 유기농검인증시스템은 결국 프리미엄상품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유기농의 특성과 차별성을 표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기농규정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의 전 생산 과정에서부터 가공 및 저장, 유통 및 수출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 까지 상품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차별성과 신뢰성을 충족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검인증시스템은 현재 인증된 약 2,000여개의 유기농식품과 섭취가능한 모든 식품(기호식품 포함) 및 사료에 적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개선방향

유기농산물이 소비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투명하고 일원화된 엄격한 검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시장의 차별화와 생산자의 경쟁력은 물론 과잉공급이나 대량소비에 따른 판로애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농식품은 관행농산물과는 달리 프리미엄 즉, 추가적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농식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하여 구매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선택의 확신감으로 구매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소비자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식품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와 신뢰도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기농상품의 브랜드와 상품표시, 안전위생 및 성분표시 그리고 생산자표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¹⁷⁾ 따라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계된 투명하고 엄격한 유기농식품의 검인증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이 다음과 같이 요구되고 있다.

1) 단일화된 유기인증제도 정착

2007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4단계로 구분되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운데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통합하여 무농약과 저농약을 포함하여 3종류의 인증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책으로는 소비시장에서의 혼란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유기농식품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인증종류를 단일화해야 한다.¹⁸⁾ 따라서 유기농산물과 관련한 유사인증제도(예, GAP인증)는 유기농인증제도에 도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농인증 자체가 고품질 생산의 가이드라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소비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단일화된 인증마크로 브랜드화를 추구하는 것이 유기농인증의 기본이기 때문이

17) 조제억(2008)

18) 유덕기(2006), 김창길(2007) 참조.

다. GAP인증은 유기농인증표시단일화로 유기인증표시가 금지된 친환경 또는 전환기농 등의 비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관행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생산-가공-유통단계로 연계된 인증제도의 도입

유기농식품은 안전성 보장이 전제되어 있는 식품이다. 따라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소비자 중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중심의 검인증제도에서 탈피하고 유기농식품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공과 유통 및 수입에 대한 검인증시스템도입이 절실하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단계적 인증제도 도입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농가 및 단체인증 ; 농가 및 유기농단체의 유기농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증(유기농장 시스템인증)¹⁹⁾
- ② 유기가공업체 인증 ; 유기농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선별처리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가공식품생산자나 기업대상 의무적 검인증제도를 도입(유기농식품의 선별처리, 포장 및 가공은 검사필수적 사항)
- ③ 유기농유통업체 인증 ; 단순한 유기농식품 거래 및 저장과 관련한 경우 유통업체의 자발적 검인증과 유통업체가 유기농식품을 직접생산, 처리 및 변형(포장개봉, 재포장, 대형포장에서 소분업포장 등)과 수입할 경우 의무적 검인증제도 도입

3. 전문분야별 인증기관 운영

유기농인증은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 이외에도 유기농식품의 스캔들 방지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은 필수적 사항이다. 인증기관이 생산과 처리 및 가공, 수입, 유통, 사료 및 양봉 등의 특용분야에서 전문적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인증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허가 승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일 분야별 인증기관들의 인증업무 정보교류를 통하여 검사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의 전문분야별 인증허가 분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생산분야 인증기관, ② 처리 가공분야 인증기관, ③ 유통분야 인증기관
- ④ 수입분야 인증기관, ⑤ 특용분야 인증기관(사료, 양봉 등)

19) 무농약 무화학비료를 전제로 농장의 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토양, 물, 공기오염방지와 생태적 자원 보호 및 에너지소비 절감과 농장 내에 도입되는 모든 작목이 폐쇄된 물질순환시스템에 의하여 재배 생산하는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의미함.

민간인증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기관으로서 생산자 단체, 전문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일정 자격기준으로서 전문경력과 관련업무수행능력 구비조건 등 엄격한 인증기관허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이들의 검인증활동과 위반사실신고와 검인증보고에 대한 사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대한 빠른 인지와 해결을 위해서는 유기농식품 뿐만 아니라 예로, 유기축산의 가축사육 적합성 평가(동물복지사육)²⁰⁾와 사료검인까지도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평가 및 협력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4. 인증종류의 다양화와 인증서의 안전성 확보

표준 또는 규격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이나 용역에 대한 일정한 질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준 또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검사의 흐름이나 과정을 규정하며 검사방법을 확정하는 것이다. 생산자나 공급자들에 의해 생산 공급하는 상품이 표준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신뢰를 가지고 증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양화되고 개방화되어가는 시장에서 기업 또는 소비자가 규정된 표준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곧 검인증이다. 이는 생산물이나 용역이 일정 표준 또는 규격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정 감시 하에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독립적 기관(제3자)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소위 인증서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단계별 또는 프로세스별 인증종류를 다양화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EU국의 사례를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

5. 단일 통합된 새로운 유기인증 마크 도입

완전히 유기농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가공식품으로서 일정 유기농함량(예, 최소 95% 이상)을 준수한 경우에 유기농생산임을 표시하는 단일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공식품원료리스트에 유기 또는 관행농산물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포장 개방된 상품인 경우 라벨에 인증기관의 코드번호의 표시의무를 두며 유기농생산자가 직접 생산, 최초 포장한 1차 농산물인 경우는 인증기관 코드번호 표시의무 없이 유기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여 제약 없이 표시할 수 있는 유기농상품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위 “유기농인증마크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 유덕기(2007) 참조.

6. 유기농검인증 데이터 뱅크 구축

유기농검인증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검인증농가 및 업체의 특성과 소비자의 신뢰와 유기농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인증농가와 가공 및 수입업체에 대한 데이터뱅크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데이터뱅크는 특히 검인증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출하할 유기농품질 보장, 유사 및 가짜유기농식품 유통방지, 최신검인증 데이터 제공 등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데이터 뱅크에 등록 가입한 농가나 업체 그리고 검인증기관은 무료이용토록 하며 데이터 보호 장치와 함께 해당 검인증기관들에 의하여 관리하고 신속한 최신정보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수입유기농·식품을 위한 국내 인증기준 강화

국내 잠재된 유기농식품의 수요 잠재력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소비시장의 불신과 이원화된 법적제도와 인증시스템의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유기농식품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의 인증서만으로 유기농가공식품과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예로, 가격 및 품질저하, 유기인증 없이 유기농표시판매 등이 나타나고 있다.²¹⁾ 국내시장의 신뢰와 품질제고 그리고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법적제도와 인증시스템을 농림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기농식품 및 원료수입에 대한 국내기준을 조속히 강화 제정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V. 결 론

오늘날 도약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업은 생산과 가공 및 유통 그리고 소비시장에서 과잉공급, 비 인증 및 가짜친환경유기농산물의 유통, 판로애로, 소비자의 불신 그리고 이원화된 제도와 분리운영 등으로 소비시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U의 유기농검인증제도<그림 1>에서 보면 일원화된 법적 제도적 체계를 유지하고 검인증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생산과 연계한 가공 및 유통, 수입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1) 경향신문(2005)보도에 의하면,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및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서울시내 대형 유통업체 10곳에서 판매 중인 국내 13개 식품제조업체의 54개 유기농 가공식품을 분석한 결과 88.9%(48개 제품)가 외국산 수입원료(제1원료 기준)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원료를 사용한 유기농가공식품이 16개 제품(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54개 유기농가공식품 중 33개 제품(61.1%)에는 유기농 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프로세스별 엄격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검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유기농검인증은 유기농식품의 스캔들 방지목적이 있다. 가짜유기농, 의도적 바꿔치기, 인증남용 등은 최상의 인증시스템으로도 완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산에서 소비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검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신과 스캔들 및 남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인증의 투명성은 소비시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유기농식품의 브랜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장기적 발전과 21세기의 대안농업으로서의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 이용가치를 제고하여 증가하고 있는 고객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하며, 유기농의 경제사회적 그리고 환경 보호적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 수출입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법적 제도적 재정비와 검인증시스템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유기농식품판매액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EU국과 독일의 유기농검인증제도와 생산자단체의 인증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유기농식품의 생산과 수출입전략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08. 2. 12. 최종논문접수일 : 2008. 3. 25.]

참 고 문 헌

1. 김창길 외. 2007. 국내외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실태. 건강과 자연농업 제24호. 유기농협회.
2. 김창길.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 건강과 자연농업 제241호. 한국유기농업협회.
3. 신용광 외. 2007. 해외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자료 제24권.
4. 이계임 외. 2005.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소.
5. 유덕기. 2001. 유기축산물의 CODEX 대응과 조직적 생산기반구축방안. 한국유기농업학회지 9(3).
6. 유덕기 외. 2004. 한국친환경농업의 정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2(3).
7. 유덕기. 2006.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정책의 성공조건.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4).
8. 유덕기. 2007. 유기축산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의 과제와 평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3).

9. 조제역. 2008. 친환경농식품의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0. 농림부. 200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농림부. 200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05442호. 제정 1997.12.13 법률 제05442호.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6호]
12. 농림부. 1997.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05299호] 제12조의 2(유기농산물의 표시)
13. 한국유기농업협회.(2003). 한국유기농업협회 인증지침서.
14. 한국유기농업협회(2008). 한국유기농업협회 인증규정 개정(안)
15. Huber. B. 1999. Ökologische Backwaren Herstellen und Verkauften Verordnung (EWG) No. 2092/91.
16. EU. 2000. Amtsblatt. 2000. 12. 9.
17. Euroäische Norm EN45011
18. BLE. 2003. Leitlinien zum Zulassungsverfahren der privaten Kontrollstellen gemäß Verordnung(EWG)No.2092/91 der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
19. <http://www.enviagro.or.kr>
20. <http://www.europa.eu.int/eur-lex/de/index.html>, www.bio-siegel.de
21. <http://www.gtz.de/organic-agriculture>,
22. <http://www.oeko-regelungen.de>
23. <http://www.gfrs.de>
24. <http://www.oeko-kontrollstellen.de>
25. <http://www.oekolandbau.de>